

1. 제정이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35호, 2021. 11. 30. 제정,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나. 임산물생산업의 품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품목을 명확히 규정함

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신설(안 제3조)

-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규정함

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함

마.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방법과 신고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함

바. 농약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농약 사용의 적정 기준을 정함

사.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의무이수시간 및 이수증 제출방법을 정함

아. 교육기관 현황 게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교육기관 현황 게시방법 및 교육실시 기관의 관리의무 등을 정함

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등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을 정함

차.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와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정함

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함

타.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등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을 정함

파. 등록신청의 공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방법을 정함

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등록신청 방법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

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등록신청 내용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방식을 정함

너.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조사위원회 내 위원 해촉, 개의를, 의결, 수당 등 운영방법을 정함

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을 정함

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재심사 신청 및 재심사 결과 처리방법을 정함

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변경등록·변경신고 방법 등을 정함

버. 조사계획의 수립·통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계획 통보 방법을 정함

서.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조사·수거 등의 사무를 보조하는 조사원의 고용 근거와 공무원 및 조사원의 증표 서식을 정함

어. 서류의 보관·비치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보관·비치 서류 종류 및 의무 비치 기간을 정함

저.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절차를 정함

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 열람 시기 및 방법을 정함

커.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열람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를 정함

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을 정함

펴.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 포상금 지급예외 사례 등을 정함

혀.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 지급대상자 등록, 준수사항 조사 등 시상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정함
고.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신설(안 부칙 제1조)

-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함

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안 부칙 제2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이전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다만, 이 중 “그 밖의 임산물”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제2장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중 같은 항 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업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다만, 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각 목의 면적 이상인 자가.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인 경우: 1천제곱미터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5만제곱미터
3.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각 목의 금액 이상인 자
가. 임업인인 경우: 120만원
나. 농업법인인 경우: 4천5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5조(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 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중 1명을 승계인으로 하고 본인 소유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서에 지급대상 산지의 권리변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농약의 사용기준)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

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7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관 현황 게시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된 기관의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된 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영 별표 2 제1호아목, 카목, 타목 및 파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란 등록 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를 의미한다. 이 때 직계존비속의 실적은 본인의 실적으로 본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되는 산지 중 같은 항 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란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업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한 자. 다만 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각 목의 면적 이상인 자가. 임업인인 경우: 3만제곱미터

나. 농업법인인 경우: 10만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육림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이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24조, 영별표 5 제1호자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

제13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등록에 필요

한 사항을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구성원 중 법 제8조에 따른 임

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임업경영정보(이하 “임업경영정보”라 한다)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7조제2항제9호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마.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

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바.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 연도 이전에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서류 및 영 제3조·제8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영 제3조에 따른 임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가

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영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영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 영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채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3조제2항제9호 및 영 제17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영 제18조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라.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마.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 연도 이전에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등 임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7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면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결과를 첨부하여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이하 “등록거부 통보서”라 한다)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소재지·소유자 등 산지현황
2. 산지의 자경(自耕)·임차(賃借)·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임업현황
3.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생산현황
4.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임업경영정보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가. 변경사항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변경사항이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 변경사항이 육림업 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산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지의 양수·임차·사용차·분할·공유지분 취득(이하 “양수 등”이라 한다) 을 신고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임업경영정보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⑤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조사계획의 수립·통보)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

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21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시장·군수·구청장등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서류의 보관·비치 의무)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4. 임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비치해야 한다.

제23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산림청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산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6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선정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

도·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2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선정·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8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이 규칙 시행
년도에 한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이
전에 본인이 시행한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육림업에 이
용되는 산지”로 본다.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제12조 관련)

구분	기준
1. 영 별표 2 제1호아목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판매단계의 유해물질(영 제14조 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잔류허용량의 안전기준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임산물의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임산물의 유통·판매단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2. 영 별표 2 제1호카목 및 영 별표 5 제1호자목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임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3. 영 별표 2 제1호타목 및 영 별표 5 제1호차목에 따른 영림기록의 작성·보관	영림기록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관할 것
4. 영 별표 2 제1호파목 및 영 별표 5 제1호카목에 따른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다음의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 가. 지역 또는 마을공동체 주변 영농·생활폐기물의 공동 수거·처리 나. 마을공동공간의 청소·정비 다. 지역 경관개선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와 직접 관련된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500퍼센트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讓渡)·임대(賃貸)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300퍼센트

2.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승계인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승계 산지 정보	산지소재지	공부상 산지면적(㎡)	
	산지소유자	취득 경로(양수, 임차, 사용차, 분할, 공유지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와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승계인이 승계하는 산지 이외에 신고인이 보유 중인 모든 지급대상 산지는 향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인)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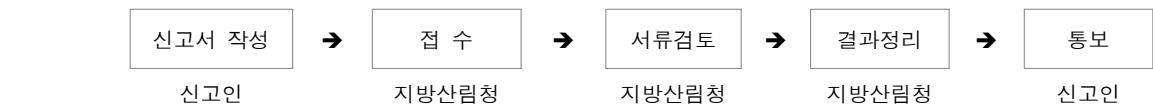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야대장 3. 임대차계약서 등(신고인 또는 승계인이 임차 또는 사용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임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11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	------	------------	---------	------	-----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마을명: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임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인 1명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 '육림업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임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임업인만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에 해당됩니다. 신청서는 등록신청인당 1부씩 각자 작성합니다.
※ 직불금 지급 계좌의 예금주는 지급대상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② 경영주인 임업인	성명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전화번호	신청유형	※ 안내문 참조
				사실임가여부	[] 시설임가
③ 경영주 외의 임업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등록신청인 기준)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므로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합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④-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등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 구성원
을 작성합니다.

*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9~29세로 학업 등을 위해 주소지가 단순 분리된 것은 세대분리로 보지 않으며, 정규 직업 등을 가지고 일정 소득 이상인 자만 세대분리로 인정

1 가족관계 인적정보가 전년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는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7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5쪽)"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되며,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

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해당란 []에 √ 하시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1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할 것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외 산지 제외	[]충족 []미충족
2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영농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충족 []미충족
3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일 것	[]충족 []미충족
4 신청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	[]충족 []미충족
5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	[]충족 []미충족
6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충족 []미충족
7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또는 양도한 산지 이외의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외된 산지를 2년간 계속 경영한 경우는 인정	[]충족 []미충족
주업기준	충족여부
8 신청인의 주소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에 소재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할 것	[]충족 []미충족
9 임산물판매액이 연간 1,600만원 이상일 것	[]충족 []미충족
10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농자재 및 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일 것	[]충족 []미충족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1**부터 **7**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부터 **7**을 모두 충족하면서 **8**부터 **10**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의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인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신청인만 해당 산지분에 한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부터 **7**을 모두 충족하면서 **8**부터 **10**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지급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

⑥-1 산지일반				⑥-3 산지 면적(㎡) A ≥ B+C+D				⑥-4 시설현황		⑥-5 품목별 재배면적		⑦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해당란 []에 √ 하시오)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⑥-2지목		산지 면적	공부(A) A ≥ 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노지 (㎡)	시설 (㎡)	신청 면적(E) E ≤ B [신청인 소유 산지 또는 신청인 명의의 임차 산지만 신청 가능] *소유, 임차 중복체크 가능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종류 선택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휴경 (C)	폐경 (D)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1개라도 "미해당"인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소규모임가 지급요건	신청· 소유면적 등	해당여부		
																소계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1 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 대상 산지의 면적의 합이 5 제곱미터 이하	신청(경영) 면적의 합 (㎡)	[] 해당 [] 미해당
																소계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1-1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1만5천 500제곱미터 미만	소유면적의 합 (㎡)	[] 해당 [] 미해당
																소계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2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 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종사 년 농촌거주 년	[] 해당 [] 미해당
																소계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3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 천만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소계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3-1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 천500만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소계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4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천 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 한 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소계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차 산지 (㎡)	5 신청일 직전연도에 농업·농 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이력 없 음(해당 임가 구성원 포함)		[] 해당 [] 미해당
합 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종류 선택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인 명의의 임차 산지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산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적절한 권원을 갖는 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면적의 합은 신청일 직전연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과 합산하여 30ha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1**의 면적을 초과하나 다른 요건(**1-1**부터 **5**)은 모두 충족하는 임가 중 면적직접지불금 금액이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보다 낮은 경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⑧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해당란 []에 √ 하시오)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1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육림업에 종사할 것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외 산지 제외	[]충족 []미충족
2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영농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충족 []미충족
3 신청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	[]충족 []미충족
4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휴경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	[]충족 []미충족
5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또는 양도한 산지 이외의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외된 산지를 2년간 계속 경영한 경우는 인정	[]충족 []미충족
주업기준	충족여부
6 신청인의 주소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도에 소재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주소지의 시·군을 기준으로 연결한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할 것	[]충족 []미충족
7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어느 하나의 주된 시·군과 연결한 시·군의 산지로 한정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이면서 해당 산지에서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 판매액이 연간 1,600만원 이상이거나 농자재 및 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일 것	[]충족 []미충족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1**부터 **5**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부터 **5**를 모두 충족하면서 **6**, **7**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의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결 시·군·구인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신청인만 해당 산지분에 한하여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부터 **5**를 모두 충족하면서 **6**, **7**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주업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⑩-2 '직전연도 10년 내 육림실적 보유 면적'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확인 사항 ※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란에 V 표시합니다.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3.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 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등록신청인의 산지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공무원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계좌정보 확인(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농업교육포털(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산림경영계획 인가 정보 임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포함- e나라도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영림활동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업분야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과 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이하 “등록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등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등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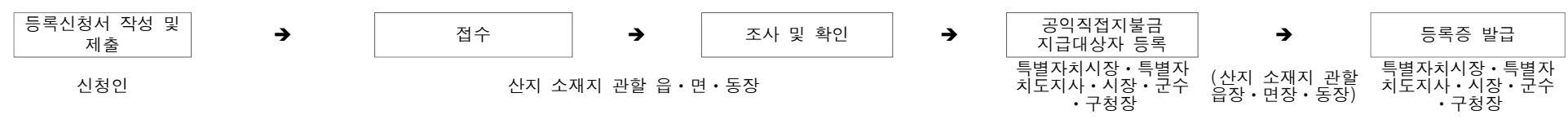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등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맞춤형 지원, 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등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산림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등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등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등록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으로 임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 ②와 ③의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등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작성합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임산물재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 ⑤란은 등록신청인이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는 충족란을 선택,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미충족란을 선택합니다.
- ⑥-1부터 ⑥-5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 중 임산물생산업과 관련된 산지 및 경영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⑦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⑥-3 ‘산지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임차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신청인 명의의 임차 산지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산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적법한 권원을 갖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종류 선택’ 란은 등록신청인이 표 안의 ❶ ~ ❺까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란을 선택,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해당란을 선택합니다. 모두 ‘해당’ 일 경우에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을 선택하고 ‘미해당’ 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면적직접지불금’ 을 선택합니다.
 - * ❶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❶-1부터 ❺에 모두 해당하는 임가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으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도 동일세대로 보아 임가 내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산림경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 ⑧란은 등록신청인이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는 충족란을 선택,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미충족란을 선택합니다.
- ⑨-1부터 ⑨-5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 중 육림업과 관련된 산지 및 경영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⑩-1란은 등록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시한 육림실적 보유 면적(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갱신,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움쌍갱신지 보육, 복층림 조성 등)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벌채 후 조림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하며, ‘육림실적 보유 면적’은 ⑨-3 산지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증빙서류: 육림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⑩-2 ‘신청면적’란은 ⑩-1 육림실적 보유 면적(E)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목 등기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소유권 관련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신청하는 산지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이며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는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법 제7조제2항제9호 및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라.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임차(賃借) 또는 사용자(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연도 이전에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시행령 제3조·제8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 나.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임산물생산업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라.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마.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II.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신청하는 산지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이며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13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 제14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연도 이전에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	--	------	--	------------	--	---------	--	------	-----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대표자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주소지:		(마을명:)	
			(전화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② 법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	증빙서류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

④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해당란 []에 √ 하시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1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할 것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외 산지의 경우 제외	[]충족 []미충족
2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영농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충족 []미충족
3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	[]충족 []미충족
4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일 것	[]충족 []미충족
5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 단, 양도한 산지 이외의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외된 산지를 2년간 계속 경영한 경우는 인정	[]충족 []미충족
주업기준	충족여부
6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연접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할 것	[]충족 []미충족
7 임산물판매액이 연간 8천만원 이상일 것	[]충족 []미충족
8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농자재 및 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일 것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1**부터 **5**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부터 **5**를 모두 충족하면서 **6**부터 **8**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의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인 농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신청인만 해당 산지분에 한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부터 **5**를 모두 충족하면서 **6**부터 **8**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관계없이 지급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⑤-1 산지일반					⑤-3 산지 면적(㎡) A ≥ B+C+D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1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면적(㎡)	⑥-2 실 경작자	
번 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⑤-2지목		공부(A) A ≥ 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합 계																	

-1, ⑥-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및 ‘실경작자’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면적의 합은 신청일 직전연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과 합산하여 50ha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⑦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해당란 []에 √ 하시오)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1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육림업에 종사할 것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외 산지 제외	[]충족 []미충족
2 신청연도 직전 1년 동안 영농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충족 []미충족
3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휴경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	[]충족 []미충족
4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것 * 단, 양도한 산지 이외의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외된 산지를 2년간 계속 경영한 경우는 인정	[]충족 []미충족
주업기준	충족여부
5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도에 소재하는 3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을 기준으로 연결한 시·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할 것	[]충족 []미충족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1**부터 **4**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부터 **4**를 모두 충족하면서 **5**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의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결 시·군·구인 농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신청인만 해당 산지분에 한하여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부터 **4**를 모두 충족하면서 **5**를 충족한 경우에는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관계없이 주업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⑨-2 '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유럽실적 보유 면적' 및 '유럽업 직접지불금 신청'란은 9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확인 사항 ※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3.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 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산지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계좌정보 확인(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농업교육포털(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산림경영계획 인가 정보	
임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포함- e나라도움)	
영림활동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이프(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업분야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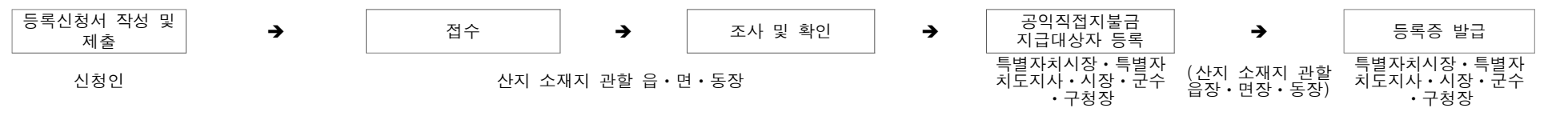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산림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는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임산물재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④란은 등록신청인이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는 충족란을 선택,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미충족란을 선택합니다.

⑤-1부터 ⑤-5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 중 임산물생산업과 관련된 산지 및 경영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⑥-1란의 **신청면적**은 ⑤-3 '산지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차 산지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산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적절한 권원을 갖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2란은 법인 내 산지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기록합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산림경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⑦란은 등록신청인이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는 충족란을 선택,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미충족란을 선택합니다.

⑧-1부터 ⑧-5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 중 육림업과 관련된 산지 및 경영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⑨-1란은 등록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법인이 실시한 육림실적 보유 면적(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숲아베기, 천연림갱신,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움씩갱신지 보육, 복층림 조성 등)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벌채 후 조림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하며, '육림실적 보유 면적'은 ⑧-3 산지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증빙서류: 육림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⑨-2 '신청면적'란은 ⑨-1 육림실적 보유 면적(E)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목 등기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소유권 관련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I.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신청하는 산지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이며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는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법 제7조제2항제9호 및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라.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연도 이전에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II.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신청하는 산지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이며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13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 제14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타인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임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등록신청연도 이전에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해당란에 "○"표시

등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산지 면적(㎡)	실제경작 면적(㎡)	품목	등록면적(㎡)
읍·면	리·동	지번 (임사지번)					
합계							

2 육림업 직접지불금()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산지 면적(㎡)	실제경영 면적(㎡)	품목	등록면적(㎡)
읍·면	리·동	지번 (임사지번)					
합계							

위 등록신청인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 공익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법 제2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제재부가금·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형사처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이 등록증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명

(경유)

제 목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 구분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 [] 해당란에 "√" 표시
거부 사유		

등록거부 내용

등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산지 소재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면적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면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면적(㎡)	
	합계						

* 위의 등록거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구분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 육림업 직접지불금			
※ ☐ 해당란에 "√"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1. 등록증 사본
2. 등록거부 통보서
3.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5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	------	------	-----

① 등록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② 산지일반					③ 산지 면적(㎡) A≥B+C+D						④ 시설현황		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⑦ 변경 사유
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⑤-2 육림업 직접지불금	⑥-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⑥-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휴경 (C)	폐경 (D)			신청 면적 (㎡)	신청 면적 (㎡)	신청 면적 (㎡)	신청 면적 (㎡)	

* 기타 변경 사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등록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등 (기타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은 제5쪽부터 제6쪽까지 참고)	수수료 없음
------	---	-----------

성명(법인명), 산지 소재지,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니다.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등록신청인의 산지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계좌정보 확인(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	행정정보공통이용시스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교육포털(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산림경영계획 인가 정보 임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포함- e나라도움) 영림활동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업분야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임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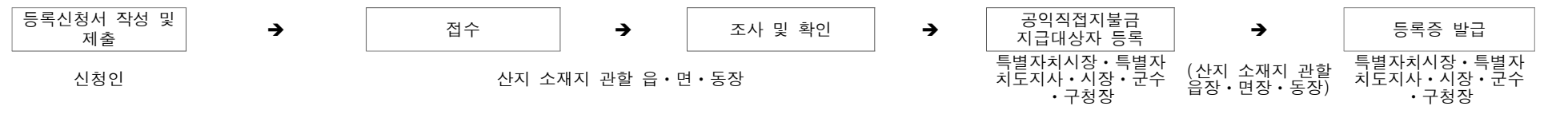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임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 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산림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 사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신청합니다.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산지의 면적·소재지·소유자** 등 산지현황
-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산지의 자경(自耕)·임차(賃借)·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임업현황
-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생산현황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등록신청서 ①~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⑥란에 작성합니다.

2. 산지가 신규로 추가될 경우 산지의 소재지, 산지 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의 필지별로 나누어 산지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임야, 밭, 과수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임산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 (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임산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 (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산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④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3. 등록신청인(법인)의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정보를 변경 전(前)과 변경 후(後) 내용을 등록합니다.

⑤-1란은 변경 전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의 '등록면적'을 작성합니다.

⑤-2란은 변경 전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등록면적'을 작성합니다.

⑥-1란은 변경 후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1란은 변경 후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이때 ⑥-1란과 ⑥-2란의 신청면적의 합이 ③ '산지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 증여, 상속, 임대(자경산지 삭제), 임차종료(임차산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항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나. 변경사항이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 변경사항이 육림업 직접지불금과 관련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 5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	------	------	-----

현 등록자	①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변경등록	②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인	직접지불금 수령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산지일반					④ 산지 면적(㎡) A≥B+C+D							⑤ 시설현황		⑥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면적(㎡)				⑦ 변경 사유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③-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1 실제 경작 (B)	④-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⑥-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⑥-2 육림업 직접지불금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등록 면적			신청 면적	등록 면적	신청 면적			
																기간 (~)		

* 기타 변경신고 사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등록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확인	읍장 • 면장 • 동장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양수·임차·사용차·분할·공유지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제5쪽부터 제6쪽까지 참고)	수수료 없음
------	--	-----------

성명(법인명), 산지 소재지,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 란에는 V 표시합니다.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확인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니다. [] 확인
5.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등록신청인의 산지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계좌정보 확인(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교육포털(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산림경영계획 인가 정보 임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포함- e나라도움) 영림활동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업분야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임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이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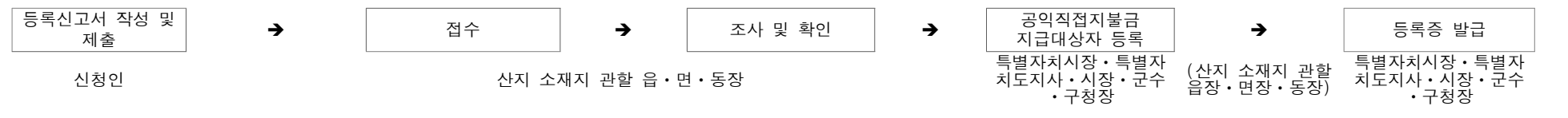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임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 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산림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사항이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9조제4항]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임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임업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인(대표자)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등록합니다.

- ①란은 변경등록신고 이전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를 말합니다.
- ②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변경등록신고하는 임업인(대표자)으로 임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임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임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인 1인에게 지급합니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등록된 경영주인 임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임업인만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등록신청인(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신청서 ②~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사유를 작성합니다.

- ③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산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③-1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임야, 밭, 과수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④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 증빙서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임산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과거 임산물을 재배했으나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산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 ⑤란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⑥-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⑥-1의 ‘등록면적(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⑥-2란은 변경신고하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⑥-2의 ‘등록면적(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등록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산지 삭제), 임차종료(임차산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사유구분: 매매, 증여, 상속, 임대(자경산지 삭제), 임차종료(임차산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변경등록신고 시 첨부서류

Ⅰ.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된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임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임차·사용차 또는 분할·공유지분을 통한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등록된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백상지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지급대상 산지·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자재판매처·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앞쪽)

제 호
조 사 원 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백상지 120g/㎡]

(색상: 연녹색)

(뒤쪽)

조 사 원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조사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지급대상 산지·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자재판매처·출하처 등을 출입할 때에는 이 조사원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구분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 육림업직접지불금 신청인 구분: [] 등록신청자, [] 수령자 ※ [] 해당란에 "√" 표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산지 지번		신청 산지 면적		
이의신청 내용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귀하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